

# 주안대학원대학교 학칙

2004. 6. 24. 제 정  
2010. 2. 25. 1차 전면개정  
2012. 2. 22. 2차 개정  
2013. 3. 27. 3차 개정  
2015. 1. 8. 4차 개정  
2015. 6. 15. 5차 개정  
2015. 10. 19. 6차 개정  
2018. 5. 1. 7차 개정  
2019. 7. 25. 8차 개정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학칙은 주안대학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건학이념 실천과 고등교육법 제 1 조와 제 28 조에 제시된 대학의 교육목적에 입각하여 교육조직, 학사운영,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목표)** 본교는 전문적인 학술이론을 체계적으로 연구, 교수하여 지도자로서 인격을 함양하고 독창적인 능력을 개발하여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선도하는 최정예 선교 지도자 배출을 목표로 한다.

**제3조 (학위과정)** 본교에 석사학위 과정과 박사학위 과정을 둔다.

**제4조 (학과 및 정원)** 본교에 선교학과(Intercultural Studies)를 두며 학생 입학정원은 25명으로 한다.

- ① 석사학위과정 : 12명
- ② 박사학위과정 : 13명
- ③ 석·박사 통합과정은 박사정원의 30%내에서 선발한다.

**제5조 (수업)** 본교의 수업은 전일제 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필요에 따라 야간 및 계절수업, 집중수업, 현장실습수업을 할 수 있다.

## 제2장 입 학

**제6조 (입학 시기)** 입학할 허가하는 시기는 매 학기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단, 재입학도 학기시작 30일 이내로 한다.

**제7조 (입학 자격)** 본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수세 후 3년 이상 경과하고 소속교회 담임목사 또는 교수(조교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써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 ① 석사과정 : 국내외 정규 4년제 대학 졸업, 졸업예정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갖춘 자
- ② 석·박사통합과정 : 국내외 정규 4년제 대학 및 목회연구과정을 이수(예정)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③ 박사과정 : 국내외 학사학위와 목회학석사(M.Div.) 혹은 선교학석사(M.A.) 이상의 학위 소지자
- ④ 외국인은 정원 외 입학으로 하되, 지원 자격은 동일하며 외국인 학생에 대한 세칙 및 규정에 따로 정한다.
- ⑤ 입학지원 절차, 제출서류, 입학전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8조 (입학 전형)** ① 석사과정은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누며 특별전형은 서류심사, 면접으로 하며, 일반전형은 서류심사, 면접 등으로 할 수 있다.

- ② 석·박사 통합과정 및 박사과정은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누어 특별전형은 서류심사, 일반 전형은 서류심사, 면접 등으로 할 수 있다.

**제9조 (편입학·재입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점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편입생으로 선발한다.

1. 국내외 다른 대학원의 동등 이상의 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
- ② 재입학은 다음과 같다.
1. 퇴학 및 제적된 자가 5년 이내에 재입학을 지원한 때는 당해 연도 정원 외 여석이 있을 때 1회에 한하여 매학기 소정 기일 내에 심사하여 허가할 수 있다.
  2. 징계에 의하여 제명 처분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없다.
  3. 재입학생이 이미 이수한 학점은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재입학 등록금 이외에 재입학 수속비를 납부해야 한다.

### 제3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10조 (수업연한·재학연한)** 본교의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은 다음과 같다.

- ① 석사과정 : 수업연한은 4학기 이상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석·박사통합과정 : 수업연한은 8학기 이상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1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박사과정 : 수업연한은 6학기 이상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평점이 A 이상인 경우, 교학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은 각각 6개월 이내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 제4장 학기·수업일수와 휴업일

**제11조 (학기)** 학기는 다음과 같이 나누며 계절학과 집중과정을 따로 둘 수 있다.

- ① 제 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② 제 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제12조 (수업일수와 휴업일)** 수업일수는 다음과 같다.

- ①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 ②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1. 하계방학·동계방학, 토요일, 일요일과 국정 공휴일
  - 2. 토요일 수업을 진행할 경우 별도로 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
- ③ 이상 재해와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제 8조의 수업일수에 제한받지 않고 임시 휴업할 수 있다.

## 제5장 등록, 휴학, 복학, 자퇴, 제적

**제13조 (정규등록과 연구등록)**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기일 내 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재학기간 동안 석사과정은 4학기를, 석·박사 통합과정은 8학기를, 박사과정은 6학기를 정규등록 하여야 한다. 정규등록 이후에도 학점을 이수하고자하는 원생은 학점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며, 학점만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원생은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 5분의 1 이상을 결석하게 될 경우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휴학기간은 각 과정마다 통산 2년으로 하며, 휴학기간은 재학 연한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총장의 허가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군복무에 의한 휴학은 예외로 하며, 휴학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제15조 (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즉시 복학을 하여야 하며, 복학 시기는 매 학기로 등록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6조 (자퇴)** 질병 또는 기타 사정으로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자퇴원을 제출하며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7조 (제적)**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처리 된다.

- ① 재학연한 내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 ② 휴학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 ③ 소정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는 자

## 제6장 교과과정, 학점 및 수료

**제18조 (교과과정)** ① 석·박사과정의 교과과정에 각각 공통필수과목과 전공필수과목,



[ 박사과정-학기별 이수 학점 ]

과목구분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6학기	계
전공필수	3	3	3	3			12
논문					6	6	12
전공선택	18						18
계							42

\* 하위과정에서 진학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추가학점을 이수한 학생이 박사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필수과목을 이수하기 전에 선수과목을 추가로 이수할 수 있다.

**제21조 (학기당 이수 학점)** ① 학생이 한 학기에 최대 수강할 수 있는 학점은 12학점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총장의 허락을 득하여 최대 수강할 수 있는 학점은 15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제22조 (이수교과목)** ① 각 학위과정에서 매 학기 이수해야 할 과목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전공 간 관련과목은 교차수강 이수과목으로 할 수 있다.

③ 각 과정별 학생의 이수과목 선택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는다.

**제23조 (공통필수과목)** ① 박사과정의 공통필수 과목은 전공필수와 학위논문이며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② 학생이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외에 본교에서 시행하는 사경회, 수련회, 예배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24조 (특설과목)** ① 특수 연구 및 각종 자격 취득을 위한 특별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규과정 외에 특설과정 과목을 이수 할 수 있으며, 이 과목에 대하여 소정의 학점 등록을 필하고 이수하여야 한다.

② 특별과정 개설, 수강신청 대상, 자격인증, 계절학기 및 특별과정 시행과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따로 정한다.

**제25조 (수료 인정 및 시기)** ① 석·박사 통합 및 박사 과정은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수업 학점을 취득한 후,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을 합격한 학생에 대하여 수료를 인정한다.

②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③ 각 학위과정 수료가 인정된 자는 별지 1의 수료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6조 (교환학생 수강 및 학점인정)** ① 교환학생의 경우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본교와 협정에 의하여 학점교환제를 실시하는 국내외 다른 대학 또는 국내외 다른 동등 이상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교학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타 대학원에서 수강할 수 있는 교과목의 한정과 수강 과목에 대한 학점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 3과목 9학점 이내
2. 박사과정 : 4과목 12학점 이내

## 제7장 수강신청 및 시험과 성적

**제27조 (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학기 소정기일 내에 해당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에 대하여 지도교수와 교학처장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② 일단 승인된 과목의 취소 또는 변경은 등록 후 4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③ 수강신청 변경과 성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8조 (추가 및 재시험)** ① 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 시험에 응하지 못한 자는 소정의 금액을 납부 후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 단, 성적취득최고 학점은 B+까지로 한다.

② 시험성적이 69점 이하인 자는 소정의 기한 내에 소정의 금액을 납입 후 총장의 허락을 받아 재시험에 응할 수 있다. 단, 성적 취득 최고 학점은 C+까지로 한다.

**제29조 (성적 평가)** 교과목의 성적 평가는 시험, 출결상황, 과제 등을 총괄하여 평가하되 학업성적의 등급과 점수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 급	점 수	평 점	등 급	점 수	평 점
A+	95~100	4.5	C+	75~79	2.5
A <sup>o</sup>	90~94	4.0	C	70~74	2.0
B+	85~89	3.5	F	69 이하	0
B <sup>o</sup>	80~84	3.0			

① 교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지정한 pass 과목은 P(이수, PASS)와 NP(미이수, Non-passed)로 평가하며 졸업할 때까지 합격하여야 한다.

② 불가피한 사유로 소정기간 내에 과목이수를 못할 경우 보류(INC)로 표기하며, 개강 후 9주 이내에 수강과목 포기를 하면 W(Withdrawal)로 부여한다. 단, W는 학점 및 평점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30조 (성적 인정)** 학점은 C등급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나 수료 성적은 평균 평점 3.0 이상이어야 한다.

**제31조 (학점 인정 출석)** ① 교과별로 한 학기 중 수업일수 3/4 이상 출석하여야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3/4 미만일 경우는 자동으로 F 학점이 된다.

② 출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결석처리에 관한 내규에 따로 정한다.

## 제8장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제32조 (외국어 시험)** 각 과정의 학생은 학위취득에 있어 전제 요건으로 전공분야의 연구에 필요한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공인된 외국어 인정성적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제33조 (종합시험)**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학위 청구논문 제출 전에 해당 전공분야 교과에 대한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석사과정 2과목, 석·박사 통합과정 및 박사과정 3과목 이상을 교학위원회 협의를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 (합격기준)** ① 각 자격시험의 합격인정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하여 다음과 같다.

1. 외국어 시험 : 70점 이상
  2. 종합시험 : 석사 70점 이상, 석·박사 통합 과정 및 박사과정 70점 이상
- ② 외국어 및 전공종합시험 응시자격 시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외국어 및 종합시험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 제9장 학위 논문 및 학위 수여

**제35조 (학위청구논문 제출)**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은 제21조에서 정한 이수학점을 취득하고 전체 학기 평점평균 석사 3.0, 석·박사 통합 과정 및 박사 3.5 이상인 자로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

② 제출한 학위청구 논문 연구 계획서는 학과별 공개 발표로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논문 원고를 작성하여 학위청구논문 심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논문 심사)** ① 각 과정의 논문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주, 부심)은 학위 심사위원회위원장의 제정에 의거 총장이 다음과 같이 위촉한다.

1. 석사과정 : 심사위원 3인으로 하되 그중 1인을 심사위원장(주심)으로 하고 2인은 심사위원(부심)으로 한다. 필요시 동일전공분야의 외부학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석·박사 통합 과정 및 박사과정 : 심사위원은 5인으로 하되 그중 1인을 심사위원장(주심)으로 하고 4인은 심사위원(부심)으로 한다. 필요시 동일 전공분야의 외부학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② 논문심사는 논문의 예비 및 본 심사와 전공에 대한 구술시험으로 한다. 다만 박사과정의 예비 심사는 2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 ③ 각 과정별 학위청구 논문 합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석사과정 : 본 심사와 구술시험시 심사위원 3인중 2인 이상 승인에 의한다.
  2. 석·박사 통합 과정 및 박사과정 : 본심사와 구술시험시 심사위원 5인중 4인 이상의 승인에 의한다.

④ 학위논문의 제출자격, 절차, 심사, 합격통과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위 논문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37조 (논문대체)** 석사학위 과정의 경우 교과목 추가 수강 및 특별 과제 등을 통해 학위논문을 대체하고자 하는 자는 총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학위 과제 제출 및 학위인정 시험은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38조 (학위수여)** ① 석, 박사학위 수여는 수료에 필요한 이수 학점을 취득하고(전공, 외국어 시험) 학위청구 논문의(구술시험 포함) 심사에 합격한 자를 교학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전공분야에 따라 제2항에 규정한 종별의 학위를 수여한다.

② 본교에서 수여하는 학위는 다음과 같다.

1. 석사학위
  - 가. 신학석사(Th.M.)
  - 나. 문학석사(M.A.)
2. 석·박사통합 학위
  - 가. 철학박사(Ph.D.)
  - 나. 신학박사(Th.D.)
3. 박사학위
  - 가. 철학박사(Ph.D.)
  - 나. 신학박사(Th.D.)
4. 명예학위
  - 가. 명예박사

**제39조 (학위기)** 각 과정의 학week는 별지2와 같으며 명예박사학위는 별지 3과 같다.

**제40조 (수여학위 취소)** 각 학위(명예박사학위 포함)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나 학위취득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을 때는 총장이 수여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 제10장 장학금·학생지도 및 상벌

**제41조 (장학금 및 장학위원회)** ① 본교의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생 선정, 장학금 구분, 지급액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로 정한다.

② 본교는 장학위원회를 두고 각종 장학제도에 관한 사항을 관장, 처리하게 한다.

③ 장학위원회 위촉과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학위원회 및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42조 (학술연구회)** 학생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학풍을 쇄신하며,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본교의 이념에 입학한 학생자치 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한 학술연구



회를 두며 학술연구회의 운영에 관한 회칙을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43조 (표창 및 징계)** ① 학생이 교내외를 막론하고 선행을 하였거나,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표창할 수 있다.
- ②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교수회의 의결에 의하여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등의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1. 성향이 지극히 불량한 자
  2. 학칙을 위반한 자
- ③ 학생에 대한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 상벌 규정에 따로 정한다.

## 제11장 교원직제, 교수시간, 교학위원회, 교수회

- 제44조 (교원 직제)** ① 본교에 교학처장, 도서관장의 보직을 두며 총장이 임명한다.
- ②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두며 총장의 재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하며 사무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③ 학과에는 학사 지도와 논문의 연구 지도를 위한 지도교수를 두되 총장이 임명한다.

**제45조 (교수시간)**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주 9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보직교수는 최소 6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 제46조 (교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① 교학위원회
1. 본교 학사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학위원회를 둔다.
  2. 교학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총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총장 부재 시는 교학처장이 이를 대행한다.
  3. 교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가. 입학과 과정의 수료 인정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 나. 학과,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 다.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
    - 라. 학사관련 제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마.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부의 하는 사항
  4. 교학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 ② 운영위원회
1. 본교의 인사, 재정, 관리 등 제반 주요사항을 기획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2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총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총장 부재 시는 교학처장이 이를 대행한다.
  3. 운영위원회는 인사위원회와 예산위원회를 겸한다.
  4.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제47조 (교수회)** ① 본교 발전 및 학생지도 등의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전체 교수로 구성하는 교수회를 둔다.

② 교수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변경에 관한 사항
2. 총장이 자문하는 운영사항 및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3. 학사, 입학, 졸업(수료),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은 교학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되, 교수회의가 심의하기를 원하는 사항

③ 교수회의는 총장이 소집하고 전 교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되 총장은 의장이 되며, 총장 부재 시는 교학처장이 이를 대행한다.

## 제12장 공개강좌·연구과정·부속기관

**제48조 (공개학술강좌)** ① 공개강좌는 선교연구, 직무, 교양 또는 연구에 관한 이론과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공개학술강좌의 과목, 기간, 수강자격, 정원,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개설시기를 정하여 발표한다.

③ 공개학술강좌를 이수한 자에게는 소정의 이수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49조 (연구과정 및 연구생)** ① 연구생을 위하여 연구과정을 둔다.

② 본 학칙을 제7조의 입학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연구를 희망하는 자는 총장의 허락을 얻어 연구생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③ 연구생으로 연구 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별지 제 2호 서식에 의한 연구실적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④ 본 학칙 제7조의 입학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청강을 희망하는 자는 총장의 허락을 얻어 청강을 허가할 수 있다.

⑤ 공개강좌·연구생 및 청강생에 대하여 강의를 요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50조 (부속 및 부설기관)** 본교에 부속 및 부설기관을 두되, 세부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① 부속기관 : 도서관, 멀티미디어실, 출판부, 생활관, 방송실

② 부속연구기관 : 주안글로벌미션센터

③ 부설기관 : 평생교육원, 한국어교육원

**제50조2 (도서관의 운영)** ①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도서관의 조직, 자료, 시설 등에 관련한 제반 사항을 정한다.

② 위 1항의 세부사항은 도서관 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50조3 (도서관발전계획의 수립 등)** 대학도서관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본교 도서관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13장 학칙변경

**제51조 (시안공고)** 학칙을 변경코자 할 때는 변경 안을 학교 게시판을 이용하여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2조 (시안심의)** 변경안은 교학위원회에서 심의 후 학교법인 주안학원 정관 조항에 의거 대학평의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단 교수회원 2/3이상의 가결을 필요로 한다.

**제53조 (변경 및 보고)** ① 변경안 중 본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은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변경된 학칙은 이를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 (시행공포)** 변경된 학칙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하며 공포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제14장 보 칙

**제55조 (시행 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6조 (준용원칙)** 이 학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 및 동 법 시행령과 법인 정관 및 대학원대학교 헌장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시행한다.

## 제15장 부 칙

**제57조(시행일)** ① 본 학칙은 2004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본 개정 학칙은 201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본 개정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본 개정 학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본 개정 학칙은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본 개정 학칙은 201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본 개정 학칙은 2015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본 개정 학칙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본 개정 학칙은 2019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1호 서식]

## 수료증 양식

주안대학원대학교 제 호

# 수료증

성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본 대학원대학교 석(박)사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주안대학원대학교 총 장 (학위) (인)

## 학위기 양식

주안대학원대학교 (석·박)제 호

# 학 위 기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본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학 석(박)사  
( 전공 ) 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인정함.

비 문 : \_\_\_\_\_

년 월 일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석(박)사(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주안대학원대학교 총 장 (학위) (인)

[별지 제 3호 서식]

## 명예박사 학위기 양식

주안대학원대학교 (명박)제 호		
<b>학 위 기</b>		
국 적	성 명 :	
	생년월일 :	
위 분은 ○○○○○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기에 본 대학원대학교		
교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 ○○학 박사학위를 수여하고자 이에 추천함		
년 월 일		
위의 추천에 의하여 명예 ○○학 박사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주안대학원대학교 총	장 (학위)	(인)